

2021년 11월 3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4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관광, 경제”를 “문화·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지원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

제5조제1항 전단 중 “2명,”을 “4명,”으로, “30명”을 “40명”으로,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시와 대구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주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장
3. 광주시와 대구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을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시장이 된다.

제9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양 시장은 위원회”로, “안건은 그 취지를”을 “안건의 내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달빛동맹 민관협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관할기관 간의 명확한 사무경계를 위해 위임사무 기준을 변경하고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기존 위임 사무와 유사한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을 통일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기준 변경 (별표2, 기후환경정책과)
- 위임사무 추가 (별표2, 자원순환과)
- 위임사무 삭제 (별표2, 생명농업과)
- 조항표기 수정 (별표2, 에너지산업과)
- 위임사무 문구 정정 (별표3, 도로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5호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달빛동맹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을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로, “민관협력 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한다.

◆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대구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2. 주요내용

-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변경(제3조)
- 위원회 기능 규정 개정 (제4조)
- 공동위원장(2→4명) 및 위원수(광주·대구 각각 20명) 조정 (제5조)
- 경제산업분야 중점 사업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제5조의2)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6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7호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38조” 를 “법 제38조제1항” 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 을 “양성평등주간” 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여성인력개발센터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여성인력 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를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센터(이하 “지정 센터” 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운영 기간 변경 및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 운영 기간 변경 (제33조)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제37조)

○ 착오기재 사항, 누락된 조항 등 수정 (제38조, 제46~47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8호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2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9호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융합 콘텐츠 연구·개발
2. 전시, 특별전 등을 통한 미디어아트 이해 증진 및 확산
3.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미디어아트 산업 관련 창업 지원
5. 미디어아트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의원은 관련 업무소관 시 본청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디어아트 작가, 광산업 및 영상콘텐츠산업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시민활동가 등 관련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 및 장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다.

제9조(운영지원)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운영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라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

1.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에 가입하였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AMT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 (제3조)

○ 운영자문위원회 (제4조~제5조)

○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권리 양도·전대에 관한 사항 (제6~7조)

○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및 위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11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0호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까지 연장 (제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1호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단의 경기 및 훈련 등
- ② 사용자 감면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프로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연고 프로스포츠팀단의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자 등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우리시 연고 프로스포츠팀단의 경기 및 훈련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 80% 감면 (제16조)

○ 첨단체육공원 체육시설(신규), 빛그린산단체육공원 축구장(신규) 사용자 신설 및 테니스장 부과기준 및 이용료 변경 등(별표 2, 3)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2호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용료를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로” 를 “이용료” 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마감일 전 최소 14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등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 기준을 준수하여 부과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소장품 및 시설물 관리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시설물 대관 관련 절차 등 개정

2. 주요내용

- 소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제19조)
- 대관 절차 등 필요사항 홈페이지 공개 및 대관 신청 비대면 원칙 개정 (제34조)
- 대관료 산정 산식 기준 명시 (제3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3호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호 : 전액
- 2. 제2호 : 사전준비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은 실비수준으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
- 3. 제1호~제2호의 사유 중 사용하지 않은 부속설비 사용료 : 전액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정요구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 조항 구체화 (제8조의2)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4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동의받은 범위에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중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제10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5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집합체이면서, 데이터 집합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과 환경전반을 말한다.
2. “빅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3.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빅데이터 기반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2.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
3. 제19조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
4.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공무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제척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4. 빅데이터의 활용 실태조사
5.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6. 시민,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7.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재원 조달 등 그 밖에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빅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국장을 빅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 등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인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데이터표준 등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데이터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액수입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빅데이터의 생산과 등록)** ① 시장은 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의 데이터 제공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시장은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과 활용상태를 매년 조사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신규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집(등록)된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8조(빅데이터 개방 및 제공)**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분석 결과에 대해 시민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19조(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시 행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매년 분석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변화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 ④ 전담부서는 제3항의 분석 결과를 해당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제20조(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부서성과평가(BSC)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의 빅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 교육기관 등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9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무
 3. 제21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23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한다.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2. 10. 시행)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메타데이터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추가 반영 및 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등 보유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제3조)
- 빅데이터기반 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5조~제13조)
- 빅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제14조)
- 빅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담당 실·국장)을 임명하도록 함 (제15조)
- 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제16조)
- 빅데이터 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6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 등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 나. 그 밖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교육·생활 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3.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이익과 나눔에 이바지한다.
4.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학습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시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6조(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시의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체의 자산 현황과 활용방안
 4. 마을공동체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제10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운용계획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마을발전계획을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 ②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마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정책협의회(이하 “마을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는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 마을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
 4.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조사
 5. 마을공동체활동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6.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
 7. 마을 지리·역사·문화·환경·경관 보전과 창조, 개선
 8. 마을 인권, 복지, 보육, 건강, 교육 등 증진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활동이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④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방재정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활동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마을활동가, 공동체 및 마을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마을활동가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 ② 시장은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촉진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주체 간 국제적인 연대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의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협의·조정
 5.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6. 관계 부서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7. 제16조에 따른 포상 및 홍보
 8. 제3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제32조에 따른 광주광

역시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위원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 환경생태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마을공동체활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위원회 공청회 등)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0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에 필요한 지원
4. 주민, 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5. 마을공동체활동의 연구,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평가
6.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7.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의 현장 견학 등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민 사이 분쟁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창의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이하 “분쟁해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하는 분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누수·악취·주차·쓰레기·애완동물 문제
 2. 그 밖에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
- ③ 분쟁해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분쟁해결 지원인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정리, 홍보
3. 마을분쟁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사업의 연구·분석·평가 등
5. 소통방 운영 및 갈등 예방 활동 지원
6. 그 밖에 마을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4조(지도·감독)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를 민간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5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제3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제3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로 본다.

◆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

1. 제정이유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제8조)
 ○ 마을공동체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20조~제30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31조)
 ○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32조)
 ○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7호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

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 직업훈련, 취업, 상담과 심리치료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8호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6.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7. “청소년부모”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우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3.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5조(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의 보호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또는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회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건강보장)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설정 및 보급
4.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생리용품의 지원

5. 청소년 체육대회 및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 지원
6.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지원 사업
7.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8.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① 시장은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상담전화로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전화는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의 연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시책 수립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기청소년 지원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2항제1호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생활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등 의료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등 학업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 직업훈련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부모 및 대물림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돕는 등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직업 능력 개발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4조(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가족지원서비스
 -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나.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가.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다. 직업소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치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쉼터 등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거점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청소년단체
- 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관계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시장은 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제7조)
-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10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9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평가)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거나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화하고,
- 한편,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19호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활동 권리)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6.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 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 담당업무 과장 및 소속 공무원
 3. 시교육청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담당업무 과장 및 소속 공무원
 4.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활동에 경험이 많은 학부모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8.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④ 시장은 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진흥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⑥ 시장은 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① 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진흥센터는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④ 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시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원칙) ①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자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시설운영자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도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련시설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시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우수 수련시설 포상) 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감승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련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이용료 및 수련비용의 부과·징수 절차 및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감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련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8.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행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련비용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된 때: 전액
 3.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50
- ②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 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 및 건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24조(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시를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수련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련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5. 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
6. 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구축
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10.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련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25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6조(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2.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3. 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 지원
 4.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매도시 협정 체결
 5.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6. 청소년교류활동 발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7.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나 민간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2. 청소년문화활동을 통한 전문문화의 계승
 3.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4.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진흥센터
 2. 청소년활동시설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제12조 관련)

연 번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 실시 종합수련시설	서구 학생독립로 37(화정동)
2	광주광역시화정청소년문 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화정동)
3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 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공원 부지 내
4	광주광역시각화청소년문 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북구 각화대로 91
5	광주광역시용봉청소년문 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북구 용봉동 산 143
6	광주광역시봉선청소년문 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남구 봉선중앙로 106
7	광주광역시일곡청소년문 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북구 소해로 61
8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 인센터	청소년 직업체험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 실시 수련시설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별표 2】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제17조 관련)

1. 청소년수련원

가. 기본시설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극장 (마이크 기본2개)	사용료	4시간	250,000	○ 사용시간 구분 - 1일: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라도 1시간으로 본다.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50,000		
		소 4시간	150,000		
	냉난방비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30,000		
		소 4시간	150,000		
		소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50,000		
강당 (80인규모)	사용료	4시간	100,000	○ 사용료 가산 - 주말(종일), 평일 야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30,000		
	냉난방비	4시간	100,000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30,000		
강의실	60인 규모	사용료	4시간	100,000	○ 단체인 30명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30,000	
		냉난방비	4시간	70,000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30,000		
	20인 규모	사용료	4시간	60,000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20,000	
냉난방비		4시간	30,000		
	대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10,000			
생활관	숙박비	청소년	6인기준	1실 60,000	*1인추가 10,000
			6인기준	1실 80,000	*1인추가 10,000
		일반	2인실	1실 60,000	
			1인실	1실 40,000	

2. 부대시설

(단위: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문화의집	요리실, 제과제빵	3시간	200,000	
		기준시간 초과(1시간당)	20,000	
	탁구, 탁구, 풋살, 탁스실, 식당 등	1시간/팀당	5,000	
무선마이크	사용료	기준시간, 개당	4,000	
특수조명		기준시간	50,000	
피아노	일반	기준시간	30,000	
		콩쿠르 등 경연 대회	기준시간	50,000

2.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원)

시설(구분)	대상/크기	기준(시간)	이용료	비고
다목적강당(홀)	단체 및 개인	2시간	50,000	
밴드연습실	단체 및 개인	1시간	10,000	음악연습실, 활동실 등 유사 공간 적용
노래연습실				노래방 등 유사 공간 적용
댄스연습실	단체 및 개인	1시간	10,000	
조리(요리)실	단체 및 개인/ 20명 이상	2시간	60,000	
	단체 및 개인/ 20명 미만		40,000	
프로그램실	단체 및 개인/ 20명 이상	1시간	20,000	다용도실, 강의실, 회의실 포함
	단체 및 개인/ 20명 미만	1시간	10,000	
동아리실(방)	단체 및 개인	1시간	10,000	
비고	1. 시설대관 외 냉·난방 및 기타물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			
	1) 청소년 요금은 이용료의 50%로 한다.			
	2) 기준 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본다.			
	3)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 사용료(기준시간 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4) 청소년과 일반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원의 50%이상인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 한다.				
5)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3. 사용료 할인				
1)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정수하고자 할 때는 인근 공공유사시설(타 수련시설, 복지관 등 광주광역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 한다.				
5. 천재지변, 시설의 사정 및 사용자가 취소 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한다.				

3.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단위: 원)

시설	항목	기준	사용료		비고
			일반	청소년	
탈탈라움(다목적홀)	사용료	4시간(기본)	200,000	80,000	○부속시설(대기실 등) 및 기본 음향/조명 포함
		초과 1시간당	50,000	10,000	
	냉난방	1시간	10,000		
미니극장	사용료	3시간(기본)	40,000	5,000	○기본음향 포함
		초과 1시간당	10,000	(1시간당)	
	냉난방	1시간	2,000		
모두의부엌	사용료	3시간(기본)	100,000	30,000	○키친과 다이닝룸으로 구성 ○기본 주방도구, 석기 포함
		초과 1시간당	10,000	5,000	
	냉난방	1시간	5,000		
회의실	사용료	2시간(기본)	5,000	1,000	(1시간당)
		초과 1시간당	1,000		
	냉난방	1시간	1,000		
합주실	사용료	2시간(기본)	30,000	5,000	○기본 악기, 음향 등 포함
		초과 1시간당	5,000	(1시간당)	
	냉난방	1시간	2,000		
무용실	사용료	1시간	20,000	5,000	
		냉난방	1시간	2,000	

워크숍 / 세미나실	사용료	1시간	20,000	5,000	○비프로젝트 포함
	냉난방	1시간	2,000		
프로그램	이용료	회당/인당	지역 유사시설 준용		○시민 누구나

※ 사용시간 기준

- 이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보며,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3조, 제5조)
-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 규정 (제6조~제7조)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제10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수련시설에 청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13-17조)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25-29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0호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광주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광주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지도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의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③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④ 보조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방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은 받은 자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건축계획을 변경한 경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신고 없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활용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2.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신축은 제외함):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3.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4. 일단의 범위 안에 있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지역(전체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③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의 경우(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년
2. 제2항제4호의 경우(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년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보조금의 지원신청, 지원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한옥 건축 특례적용) ① 법 제26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

이 한옥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여부 판단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및 수행한다.

- 위원회의 심의사항
 - 한옥밀집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우수건축자산·한옥 수선 등 및 한옥마을 조성의 비용지원 결정 등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정·개정
 -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자문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수행사항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 시행계획과 관련된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19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광주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주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등) ① 시장은 보조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광주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 업무의 처리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 건축자산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6
- ②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한옥 장인 인증제 및 우수 한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제7-1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 이하로 규정(제13조)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제17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1호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15,000원)를 신설 (별표)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2호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336호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부칙)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3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으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광주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영 제2조”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시장”을 “이하 “시장””으로, “이하 “문예진흥계획”을 “이하 “문예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의”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에 따른”을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건축주(이하 “건축주””를 “건축주(이하 “건축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3조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2년”을 “1년”으로, “사후관리에 노력”을 “사후관리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 제1호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영 제12조 제6항”을 “영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 자”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광주시의회”를 “광주광역시의회”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2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전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제1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미술작품심의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밀 누설 등 심의위원 해촉사유 신설 (제22조)
-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의 의무를 신설 (제2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4호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권리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실효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 주요내용

-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상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5호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제5조)
-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 위탁 근거 마련 (제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6호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1.10.18.)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 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11. “개량”이란 급수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급수관에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급수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호 중 “개조공사: 급수관구경”을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으로,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를 “위치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량공사: 노후된 급수설비를 갱생·교체·성능향상 장치 설치 등 개량하거나 세척하는 공사

제10조의 제목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를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소유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로 하고, 이에 대해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를 “소유로”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급수설비등의 검사)”를 “(급수설비의 검사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고, 수도사용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 또는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가온 농도, 색도 또는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에게 개량 또는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개량 또는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개량 또는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범위와 방법,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7호 중 “보수”를 “관리(개량 또는 세척 등)”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노후되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수공사”, “개량”, “세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공사에 개량공사를 추가함(제2조,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4.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물품 구입 지원
 5. 골목상권 내 다른 상인회·조합 등과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상권”을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으로 정의(제2조)
-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27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설비가 비내식성 자재인경우와 수직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개량 또는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광주광역시 규칙 제3259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중 “교체·개량공사비를”을 “교체 또는 갱생·세척공사비를”로, “교체·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교체 또는 갱생·공사비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체·갱생공사비”를 “교체 또는 갱생·세척공사비”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규칙 제3257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손실보상 관련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추가 (별표,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 불일치 규정 정비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의 종류 확대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0조(공사비의 지원)
 - 지원사업 종류 : 개량공사(교체·갱생) → 개량공사(교체·갱생·세척)
 - 지원범위에 세척 삽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2px;">현 행</th> </tr> <tr> <td style="padding: 2px;">-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td> </tr> </table>	현 행	-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2px;">변 경</th> </tr> <tr> <td style="padding: 2px;">-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 . 세척</td> </tr> </table>	변 경	-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 . 세척
현 행						
-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						
변 경						
- 보조사업종류 : 교체 . 갱생 . 세척						

광주광역시 규칙 제3258호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광주여성재단으로 하여금여성인제”를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하여금 여성인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광주여성가족재단 명칭 미 변경된 조항 수정

2. 주요내용

- 재단 명칭 변경 (제4조)
 - (제)광주여성재단 → (제)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5호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조사 및 사무국 운영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알리고, 결정내용은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함 (안 제2조 ~ 제11조)

-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접수한 고충민원이 단순 일반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상임옴부즈만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제23조)
- 사무국 운영 :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4조 ~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전자우편 : yyd19713@korea.kr
- 2)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5층, 감사위원회)
- 3)팩 스 : 062-613-3161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전화:062-613-31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붙임】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상임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상임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 사유서를 상임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제적의 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체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4.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 5.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 6.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 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 8.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상임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상임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제심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심을 요청받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상임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제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1. 제심의 대상 : 위원회 회의에 부침
- 2. 제심의 비대상 : 관계 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1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8조에 따른 관할 기관의 관련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 대해서 음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단순 일반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상임음부즈만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해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제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또는 감정의 의뢰
- ② 관계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참석하에 조사해야 한다.
- ⑤ 상임음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비슷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합의) 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조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정) ①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정서에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고충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4조(사무국)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읍부즈단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팀장이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5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장 보칙

제26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7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8조(문서 및 판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르며,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제29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사무명	사무전결	
	사무국장	상임읍부즈단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계 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읍부즈단 결정 나. 조사의 중지·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읍부즈단위원회 상정 전 합의 바. 읍부즈단위원회 상정 전 조정 사. 조사결과 보고		○ ○ ○ ○ ○ ○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 여부의 결정 아.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파견직원 관리 다.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마. 신분증명서 발급 및 관리 라.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6호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 정비를 통해 관내 폐기물 분야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 추가 정비(안 제14조)
▶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47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조 례(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794613yu@korea.kr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9층 자원순환과
- 팩스(fax) : 062-613-1669

4. 기타사항

가.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062-613-1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과 자원재활용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95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완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2.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	비 고	
합 계	-	-	337	58,339.0	1,010,413.4		
일 반 도	계	-	204	58,078.0	959,995.2		
	광로	2	60	1	2,769	165,530.4	
	대로	1	35	2	4,433	107,502.9	국도13호선은 폭10m만 포함
		2	30	1	2,221	69,923.1	
		3	25	5	8,169	218,422.5	

중로	2	15	25	12,839	193,754.5	
	3	12	15	2,756	33,827.2	
	1	10	30	6,879	69,891.3	
소로	2	8	100	11,431	97,016.3	
	3	6	25	581	4,127.0	
	계	-	-	133	6,261.0	49,495.5
보행자전용도로	1	10	26	3,542	35,618.6	
	2	8	6	283	2,264.5	
	3	6	101	2,436	11,612.4	
기 타	-	-	-	-	922.7	부가차로, 도로모퉁이 등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	비 고		
합 계	-	-	337	58,337.0	1,010,653.3			
일 반 도	계	-	204	52,076.0	960,235.1			
	광로	2	60	1	2,769	165,530.4		
		대로	1	35	2	4,433	107,697.1	국도13호선은 폭10m만 포함
			2	30	1	2,221	69,923.1	
	중로	3	25	5	8,169	218,422.5		
		2	15	25	12,839	193,754.5		
		3	12	15	2,756	33,827.2		
		1	10	30	6,877	69,937.0		
	소로	2	8	100	11,431	97,016.3		
		3	6	25	581	4,127.0		
계		-	-	133	6,261.0	49,495.5		
보행자전용도로	1	10	26	3,542	35,618.6			
	2	8	6	283	2,264.5			
	3	6	101	2,436	11,612.4			
기 타	-	-	-	-	922.7	부가차로, 도로모퉁이 등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1	35	주간선	1,926	대로 1-34 장덕동 602-122	대로 1-27 (동축지구계수완동)	일반도로	근린공원수5	광고2004-94 (04.09.01)	
변경	대로	1	41	35	주간선	1,926	대로 1-34 장덕동 602-122	대로 1-27 (동축지구계수완동)	일반도로	근린공원수5	광고2004-94 (04.09.01)	선형변경 면적변경
기정	소로	1	수9	10	국지도로	220	대로 1-수1 장덕동 166	중로 2-수6 장덕동 243-1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수9	10-10.5	국지도로	218	대로 1-수1 장덕동 166	중로 2-수6 장덕동 243-1	일반도로	-	-	폭원 및 연장변경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41	대로 1-41	• B=35m(변경없음) • L=1,926m (변경없음) • A=73,238.3㎡→73,432.5㎡(증 194.2㎡)	• 건축심의(교통·경관 공동)심의의견 반영으로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소로 1-수9	소로 1-수9	• B=10m → 10-10.5m • L=220m → 218m • A=2,368.0㎡→2,413.7㎡(증 45.7㎡)	• 1-41호선의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소로1-수9호선 가각부 조정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폭원확장

(2) 주차장(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제시설(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다. 가구 및 획지구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 없음"

나) 용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상6	1	9,013.0	-1	3,151.0	
			-2	3,070.3	
			-3	2,791.7	

【변경】

<p>리업의 적합성확인 및 통보</p> <p>10.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과징금 부과징수</p> <p>11. 제 47조의2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p>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명 칭 : 마산마을 앞 놀재로 보도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노 선 명	총 계 획	금회시행	비고
중로 3-222호선	L=1,786m, B=12-15m	L= 188m, B=2-3m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40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세하 공영차고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세하 공영차고지) 부지 내 자동차정류장 사무소 및 정비소 증축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2021. 11. 3.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385-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명 칭 : 세하 공영차고지 사무소, 정비소 증축
3. 사업 규모(변경없음)
 - 건축면적 : 572.71㎡ (증200.00㎡)
 - 건축연면적 : 884.56㎡ (증497.24㎡)
4. 사업 시행자(변경)
 - (당초)성명 : 광주광역시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변경)성명 : (유)대원시내버스(대표 조병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1번길 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 8. 3. ~ 2022. 7. 31.
6.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변경없음)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토 지				권리자		
	동구분	권 리 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세하동	385-1	주	10,025.1	10,025.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29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22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309-1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등의 세목조서(붙임)

7.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613-6893) 및 우리 구 도시재생과(360-7689)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면 적 (㎡)	권 입 면 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벽진동	309-12	도	214	21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424			
2	벽진동	309-11	도	88.1	88.1	광주광역시				
3	벽진동	422-12	도	193.1	193.1	광주광역시				
4	벽진동	422-37	담	41.2	41.2	광주광역시				
5	벽진동	422-8	구	459	15.9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21-2125호

성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수립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04-94호(2004.09.01)로 결정된 성덕근린공원에 진출입로 개선 등으로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01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89	근린공원	성덕근린공원	31,067.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127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2001. 04. 19.(건고 제91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산지형 공원특성상 주진 · 출입로에 계단시설이 많아 발생하는 민원사항 개선
- 보행약자 등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 증대

4. 법적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률 (법정 40%이하)	7.87%	14.62%	증 6.75%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	-%	
건축률 (법정 10%이하)	-%	-%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31,067.8	31,067.8	-	-	-	-	
시설계	4,316.0	4,541.9	-	-	-	-	시설률: 14.62% (증 225.9㎡)
도로 및 광장	3,871.0	4,166.9	-	-	-	-	증 295.9㎡
조경시설	375.0	375.0	-	-	-	-	
휴양시설	70.0	-	-	-	-	-	감 70.0㎡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의시설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녹지계	26,751.8	26,525.9	-	-	-	-	녹지율: 85.38% (감 225.9㎡)

6.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기간 : 2021. 11. 1. ~ 2021. 11. 14. (14일간)

8. 열람장소 : 광산구청 공원녹지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공원녹지과 이동배(☎062-960-8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